

#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12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3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
- 도시농업 업무의 일부를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(법인) 등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조의 도시농업 정의 확대에 따른 문구 수정(안 제3조).
- 2차(2019~2023) 도시농업육성계획에 의거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구현을 통한 도농상생의 기반 마련 (안 제5조).
-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일정자격을 갖춘 개인, 단체, 법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(안 제12조의 2).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9. 1. 23. ~ 2019. 2. 12.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일부개정조례안, 현행조례, 입법예고 결과보고, 방침결정문

< 붙임 1 > 일부개정 조례안

##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”을 “활용한 농업활동으로 취미, 여가,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재배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”을 “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업 농업인과의 상생을 위한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 중 “업무담당국장, 농업기술센터소장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, 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, 단체, 기관,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농업기술지원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시농업팀장 조현숙(행정 3764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</p> <p>1. “도시농업”이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<u>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</u>를 말한다.</p> <p>제5조(도시농업인의 책무) 도시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,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 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하는 등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도시농업위원회) ①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1. <u>당연직위원 : 업무담당국장, 농업기술센터 소장</u></p> <p>2. &lt;생략&gt;</p> <p>⑤ <u>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</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3조(정의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활용한 농업활동으로 취미, 여가,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재배하는</u> -----</p> <p>제5조(도시농업인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</u> <u>며, ----- 발전과 전업농업 인과의 상생을</u> -----</p> <p>제7조(도시농업위원회) ①~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④ -----</p> <p>1. <u>당연직위원 : 농업기술센터 소장, 업무담당과장</u></p> <p>2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⑤ -----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</p> <p>제12조의2(사무의 위탁) <u>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, 단체, 기관,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

#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129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. 4. 2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6. 수정이유

- 상위법에 근거 양봉을 포함한 곤충의 사육도 도시농업에 포함됨에 따라 자구를 조문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.

## 6. 주요골자

- 도시농업의 범주에 곤충의 사육도 포함 되어 조문 중 “재배”를 삭제(안 제3조제1호)

#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  
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호 중 “목적으로 재배하는” 을 “목적으로 하는” 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도시농업”이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<u>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.</u></p> <p>2.~5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“도시농업”이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<u>활용한 농업활동으로 취미, 여가,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.</u></p> <p>2.~5. (원안과 같음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“도시농업”이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<u>활용한 농업활동으로 취미, 여가,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.</u></p> <p>2.~5. (원안과 같음)</p>